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유리 KOSPI200 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 투자 설명서 >

Yurie
Asset Management
유리자산운용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 KOSPI200 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투자신탁명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자산운용사명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p style="color: red;">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style="color: red;">※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3월 21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I.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I. 자산운용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 관련사항

II. 판매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III. 수탁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개요, 주요업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I.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쪽)

1. 명 칭 :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59656)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파생상품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유리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4~8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주식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목표주가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 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KOSPI200 추적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부분복제법을 통해 구성				
3. 주요 투자위험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신탁의 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및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2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 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주식시장 변동리스크를 감안 시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8년1월말)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한진규	40	본부장	33개	12,743억
	※ 이 펀드의 운용은 인덱스운용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 임				
7.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근1년 (07.2.1~08.1.31)		설정일 이후 (06.8.28~08.1.31)	
	Class C	22.14%		26.99%	
	비교지수*	18.06%		20.15%	
*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 주)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누적수익률임.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9~12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수익증권 판매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제한없음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 0.8%	없음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¹⁾	없음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433%	연 0.433%
		판매회사보수	연 0.220%	연 1.020%
		기타보수	연 0.045%	연 0.045%
		보수합계	연 0.698%	연 1.498%
	기타비용	연 0.015%	연 0.015%	
총보수·비용비율 ²⁾		연 0.713%	연 1.513%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 3) 기(2008년3월21일 이전) 발행된 수익증권은 "Class C 수익증권"으로 봄

2. 과세 : 수익자는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1.현재 **개인15.4%, 법인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에만 가능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D D+1</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3시이전) (D+1기준가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D D+1 D+2</p> <p style="text-align: center;"> ----- ----- </p> <p style="text-align: center;">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3시이후) (D+2기준가적용)</p>
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D D+1 D+2 D+3</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 style="text-align: center;">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3시이전) 적용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D D+1 D+2 D+3</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 style="text-align: center;">환매청구 기준가 환매대금 (3시이후) 적용 지급</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 _____
 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6년 08월 28일 설정 2007년 07월 12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인하 2008년 03월 21일 “종류형”으로 변경 (Class A 수익증권 추가)			
6. 수탁고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 A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 Class C 수익증권 			
	연도	현재(08.1.31)	6개월전(07.7.31)	1년전(07.1.31)
	수탁고	823	851	179
	증가율	-3.3%	375.4%	-
	* 수탁고 = 순자산총액(억원) * 증가율은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임			
7. 해지사유	<p>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p>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목표주가지수(KOSPI200)와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목표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가격의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기본적으로 KOSPI200을 추종하되 제한적 범위내에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유리지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모형을 활용하여 목표주가지수 추적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부분복제법을 통해 구성됩니다.
 - 스프레드거래, 현선물간 대체거래, 종목별 비중 조절 등을 통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에 실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1)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목표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수반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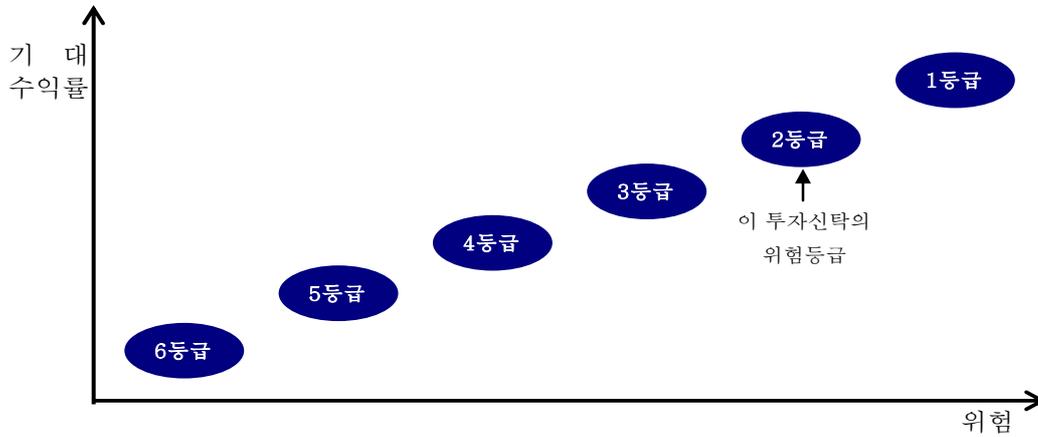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변동리스크를 감안 시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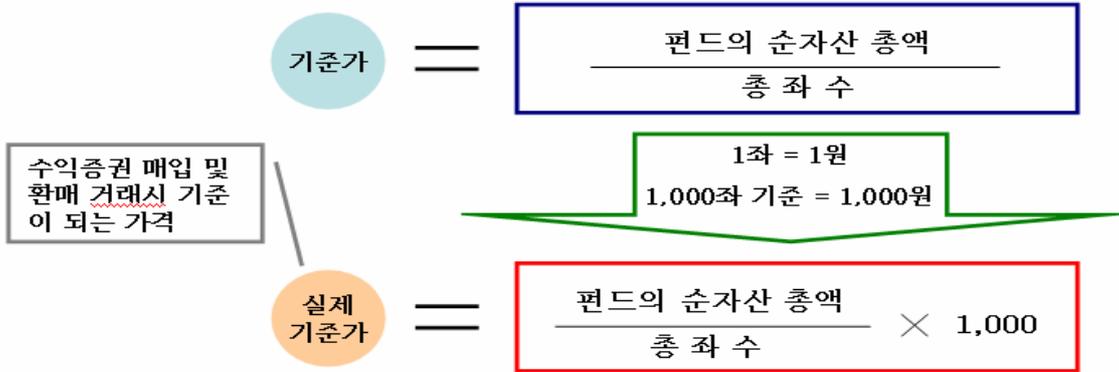
등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유리 명품 VISTA 글로벌 주식형 펀드
2등급	유리 Growth & Income 주식형 펀드
3등급	유리 WB 사모 주식혼합 1호
4등급	유리 골드 채권혼합형 1호
5등급	유리 Ever Rich 사모채권 1호
6등급	유리 법인 MMF 2호

[등급분류 기준]

등급	등급 내용	등급 기준
1 등급	극히 높은 위험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에도 위험이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예)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펀드, 코스닥 전용 펀드, 이머징마켓 투자펀드, 부동산개발 펀드, 원금의 전액손실이 가능한 장외파생 상품 펀드
2등급	매우 높은 위험	단기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장기투자 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 예) 일반적인 순수주식형
3등급	높은 위험	2등급과 4등급의 중간 수준으로서 신탁재산의 상당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예) 주식혼합형, 손실한도가 제한된 장외파생상품
4등급	중간 위험	단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장기투자 시 손실의 회복이 거의 확실한 경우 예) 채권혼합형, 잔존만기 5년이상의 채권형
5등급	낮은 위험	중장기 투자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예) 일반 채권형, 지수연계 채권형, 차익거래 추구형 등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변동성과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자산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 예) MMF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yurieasset.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08년1월말)	주요 경력
한진규	인덱스 운용본부	본부장	12,743억	KAIST경영정책 석사 한국투자신탁 투자공학팀 당사 2000년2월~현재

※ 이 펀드의 운용은 인덱스운용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임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 연평균 수익률 (Class C 수익증권)

기 간	최근1년(07.2.1~08.1.31)	설정일 이후(06.8.28~08.1.31)
투자신탁	22.14%	26.99%
비교지수(KOSPI200)	18.06%	20.15%

주)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누적수익률임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Class C 수익증권)

기 간	최근1년(07.2.1~08.1.31)	설정일 이후(06.8.28~08.1.31)
투자신탁	22.14%	26.99%
비교지수(KOSPI200)	18.06%	20.15%

주)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누적수익률임

*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100%**

(비교지수는 유리자산운용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이란 전월 초 비교지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8%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없음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운용회사 보수	연 0.433%	연 0.433%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220%	연 1.020%	
수탁회사 보수	연 0.030%	연 0.03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15%	연 0.015%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연 0.015% (실비)	연 0.015% (실비)	
총보수 · 비용비율	연 0.713%	연 1.513%	-

주1)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기준입니다.

주2) Class C의 경우 판매보수가 Class A 보다 더 높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는 신탁회계에서 비용계정이 아닌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비율에 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153천원	310천원	481천원	971천원
Class C	155천원	488천원	851천원	1,891천원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구 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 납입시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환매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 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 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가) Class A 수익증권 : 없음

(나) Class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 [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KOSPI200을 추종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 초과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주식스코어링모형, 배당스코어링모형, 채권스코어링모형, 부도확률예측모형을 통하여 종목별 등급을 사전적으로 결정합니다.
- 인덱스구성모형을 활용하여 사전적 등급, 정성적 분석결과, 예상실적 및 주가변동요인(Risk Factor) 별 노출도를 감안한 바스켓을 구성합니다.
- KOSPI 200 선물가격의 BASIS에 따라 주식투자비중의 일부를 선물로 대체하는 전략을 구성합니다.

[초과수익 추구 전략]

- Analyst의 기업예상실적 계량화에 의한 인덱스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다양한 제약조건 설정에 의한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목적식과 제약조건 만족하도록 최적화기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추적오차 한도 내에서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인덱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제도적 차익거래 및 통계적 차익거래(Pairs Trading)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컨버전 및 리버설 전략을 구사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컨버전은 선물 매수와 함께 합성선물을 매도(콜매도+풋매수)하여 포지션을 설정하고 반대매매로 청산하거나 옵션만기일에 현물바스켓을 매도하는 거래입니다. 리버설은 선물을 매도와 함께 합성선물을 매수(콜매수+풋매도)하여 포지션을 설정하고 반대매매로 청산하거나 옵션만기일에 현물바스켓을 매수하여 포지션을 종료하는 거래입니다.]
- 선물 원월물과 근월물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트래킹 에러 관리]

-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유리 부도 Scoring 모형을 활용하여, 부도위험이 있는 종목은 사전적으로 배제하거나 투자비중을 최소화 시킵니다.
- 목표주가지수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적오차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Risk Factor에 대한 엄격한 제약 조건을 부가합니다.
- 장중 추적오차 분석모형을 통한 실시간 Monitoring을 수행합니다.
- 추적오차가 일정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적오차 분석모형을 통한 원인분석 수행 및 대응책 수립 후 신속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시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외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 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IV.매입·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의 '2.환매관련 유의사항/(2)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주식	10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2)	채권	10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어음	10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4)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 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수익증권 등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단,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 이하
(7)	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8)	장내 파생상품	위탁 증거금의 합계액이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 옵션
(9)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10)	투자증권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고유재산 거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가.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 제외)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 (1)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2)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F)의 간접투자증권 (3)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 투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투자	(1)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외국간접투자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 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가능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가) 선정시 고려사항

유리KOSPI200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2) 장내파생상품 거래 : 위 “가. 투자증권 거래”의 경우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 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

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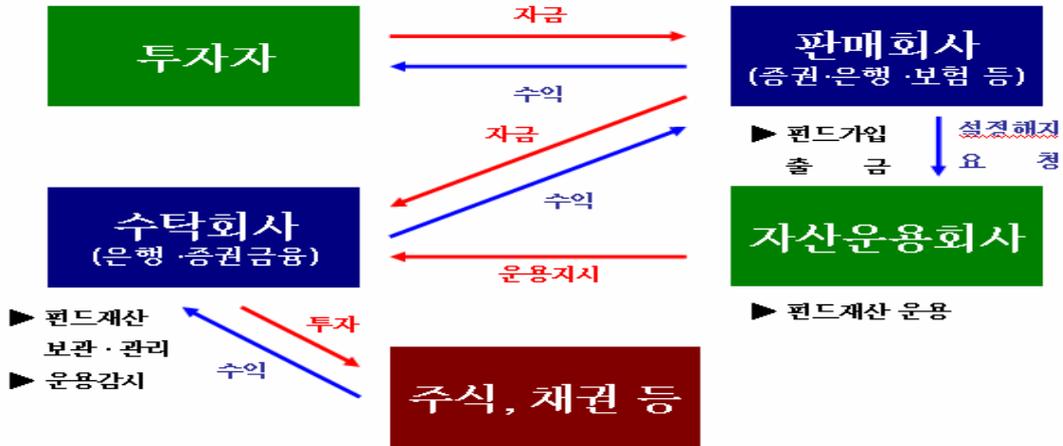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분배등 관련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02)2168-7900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제8기	제9기	항 목	제8기	제9기
유동자산	9,644	16,734	영업수익	6,578	9,321
고정자산	2,701	3,662	영업비용	4,873	6,122
자산총계	12,344	20,396	영업이익	1,705	3,199
유동부채	673	1,336	영업외수익	207	13
고정부채	17	231	영업외비용	41	22
부채총계	690	1,567	경상이익	1,870	3,190
자본금	10,300	15,300	법인세차감	539	975
이익잉여금	1,129	3,331			
자본총계	11,429	18,631	당기순이익	1,331	2,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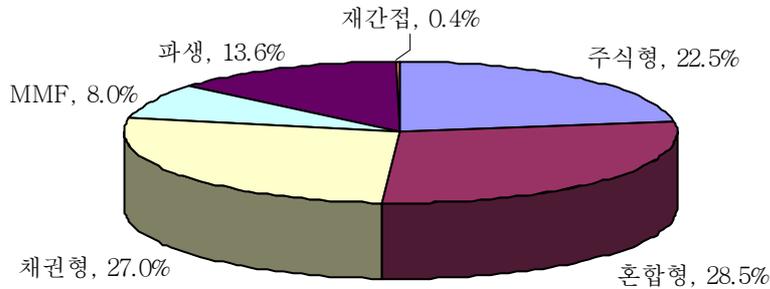
* 제8기 : 05.04.01~06.03.31 / 제9기 : 06.04.01~07.03.31

* 상기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필한 자료로서 감사 의견은 적정임

4. 운용자산 규모

(2008년 2월 29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재간접	합계
수탁고	8,197	10,407	9,840	2,911	4,964	142	36,461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8년1월말)		주요 경력	비 고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한진규	40	본부장	33개	12,743억	KAIST경영정책 석사 한국투자신탁 투자공학팀 당사 2000년2월~현재	팀운용 (인덱스운용본부)

※ 이 펀드의 운용은 인덱스운용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임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588-9999 www.kbstar.com	1963.02. 창립 2001.10. 주택은행과 합병 2003.09. 국민신용카드 흡수합병 2005.12. 아시아 10대 은행 선정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전화번호	1588-9999
홈페이지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의 법령·신탁약관에 부합 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전화번호	02)757-1784
홈페이지	2003. 4. 1 설립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광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광고 업무
- 자산운용회사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광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한국채권평가(주)	2000.0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02)399-3350
KIS채권평가(주)	2000.0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02)3770-0400
나이스채권평가(주)	2000.0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02)739-3590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관련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 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사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간접투자재산을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으로 구분합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10%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유리 KOSPI200 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